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 유형

-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
-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 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송부처 : (우)073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 송부시한 : 2017년 02월 20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02월 2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르네코의 2017년도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 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7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			(인)	
주소 :				